

노인학대 ·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I. 노인학대 정의

- 01**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 02**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

II.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01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학대
- 02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 03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행태적 분류

○ 신체적 학대



노인의 안전 및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행위로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를 저해하는 행위

○ 성적 학대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 또는 행위를 겪는 것과 노인에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노인으로서 하위급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느끼게 하는 행위

○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노인 자신의 육체적 ·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총체적 거부행위 (자기방임)

○ 유기



의존적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III. 노인학대 원인

노인학대의 발생원인에는 크게 학대를 유발시키는 노인관련 요인,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 관련요인,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요인, 가정환경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01 노인의 개인적 특성**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
- 02 노인의 의존성**
노인의 장애, 질병, 치매 등
- 03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 정신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
- 04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부양자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부양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등
- 05 가정환경적 요인**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
- 06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
어려서 학대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함
- 07 사회 문화적 요인**
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

IV. 노인보호 관련 법규정

구분	내용	비고
노인 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 (제28조 제1항 제2호)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 받기가 곤란할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제28조 제1항 제3호)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할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제28조 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인도 (제 39의7 제2항)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이 치료할 때 인도

V. 노인학대 처벌 관련 법규정

구분	내용	비고
노인 복지법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39조의9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1호)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제39조의9 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제39조의9 제3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4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제39조의1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